2016
국정감사

존중받는 군인, 튼튼한 국방!

군인권보호관 제도 길라잡이

발행 I 우상호 의원실
자문 I 군인권센터

국회의원 우상호
(국방위원회, 서울 서대문 갑)

2016
국정감사

존중받는 군인, 튼튼한 국방!

군인권보호관 제도 길라잡이

발행 I 우상호 의원실
자문 I 군인권센터

2016. 9

국회의원 우상호
(국방위원회, 서울 서대문 갑)

목차

서론: 대한민국에도 국방 옴부즈만이 필요합니다 — 1

옴부즈만이란? — 3
- 옴부즈만의 개념
- 옴부즈만의 역사
- 옴부즈만 설치 사례

국방 옴부즈만 제도 유형 — 5

사례연구: 독일의 국방 옴부즈만 운영 — 7

한국형 국방옴부즈만
'군인권보호관'은 왜 필요할까요? — 9
- 군내 인권 침해 문제의 현주소
- 군내 인권 침해 구제 제도 평가
-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 구제제도의 효능감과 옴부즈만 필요성 인식

국방 옴부즈만 논의 연혁 — 13

군인권보호관은 어디에 설치되어야 할까요? — 15
- 희망 소속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 군인권보호관 제언

결론: '제복입은 시민을 위하여' — 17
: 20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합시다.

대한민국에도

국방 옴부즈만이 필요합니다.

2014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민사회 진영과 정치권 모두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민·관·군으로 이루어진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입법 청원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인권 침해 문제는 '현재 진행형' 입니다.

[표: 군인권센터 인권 침해 상담 전화 수신 건수 통계]

2014년 이후 확인된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사건, 병영 부조리, 의료사고 등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갑자기 군대 내 인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간의 성과를 통해 군대 내에 인권 의식이 확산되면서, 군의 특수성이라는 미명 하에 은폐, 축소되어 온 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국방 옴부즈만' 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 논의입니다.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효과를 입증 받은 바 있는 '국방 옴부즈만' 은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국방 옴부즈만은 국방 영역에 대한 문민 통제의 원칙에 입각, 각종 인권 침해 문제에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입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청원에 의해 19대 국회에서 한국형 국방 옴부즈만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군인 인권의 파수꾼인 '국방 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옴부즈만이란?

개념

옴부즈만은 현대국가에서 행정부문의 강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행정권 남용과 그에 따른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외적 통제 수단입니다. 강화된 행정권으로 인한 국민 인권 침해를 예방, 통제, 관리 감독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스웨덴어로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을 뜻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

1809년 스웨덴 헌법에 제도가 명시된 이래,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를 중심으로 채택되었고, 영국, 독일,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옴부즈만 설치 사례

스웨덴

도입 | 1809년

위상 | 헌법 기관, 의회 소속
정치적 독립성 보장
헌법기관으로서 업무감독을 받지 않음
연례보고서 제출 등 의회와 업무 협조

업무 | 법원 · 일반행정 공무원 · 군인 감찰,
입법 제안, 비위 공무원 처벌 건의

권한 | 자료제출요구권, 협조요구권, 소추권,
징계요구권, 직권조사권, 사찰권

선출 | 의회 선출, 임기 4년, 재임 제한 없음

지위 | 대법관에 준함, 별도의 사무국 설치

특징 | 권고 시 준사법적 결정의 효력
100% 가깝게 수용 됨

덴마크

도입 | 1946년

위상 | 헌법 기관, 의회 소속
활동지침규정 외 의회로부터의 자유 보장
법원행정 관여 불가
(법원행정 감찰은 특별법원 소관)

업무 | 일반행정 · 군사행정 · 지방행정 감시,
위법행위 의회 고지, 법률 개정 제안

권한 | 조사권, 직권조사권, 검열권, 청문권,
수사지시 · 소추권, 공무원 재량권 심사,
행정기관 상대 빈민무료소송권 행사

선출 | 의회 선출, 임기 4년, 재임 가능

특징 |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와의 관련성으로
전문가의 관심이 큼

영국

도입 | 1967년

위상 | 법률 기관, 의회 소속

업무 | 중앙 · 지방 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
감독,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권한 | 자료제출요구권, 증인출두요구권
심문권, 형사고발권
(*직권조사권은 부여되지 않음)

선출 | 의회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
정년 65세, 임기제한 없음

지위 | 직무 상 면책특권, 별도의 사무국 설치

특징 | 옴부즈만 민원 시 의원을 거쳐야 함

뉴질랜드

도입 | 1962년

위상 | 법률 기관, 의회 소속

업무 | 중앙 · 지방 행정기관, 국유기업,
교육기관,, 보건소 등 감독, 권고
제도개선, 행정정보공개 가부 결정

권한 | 기록제출요구권, 소환심문권
수상 및 의회에 대한 보고권,
연차보고서의 언론공표권

선출 | 의회의 추천으로 총독이 임명
임기 5년, 1회 연임 가능

지위 | 별도의 사무국 설치

특징 |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고 후 관보 게재

국방 옴부즈만 제도 유형

통합적 군 감독기구를 군 내 지휘계통의 일부로 구성

■ 군내 지휘계통의 일부로 옴부즈만을 설치

재직자	현역 군인
장점	명령, 통제 문제에 민감, 작전상 효과 보호에 주의
단점	군대 스스로 감독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권고 조치에 대한 신뢰 잠식
특징	군 당국의 선호
채택국가	미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민간감독기구가 기능의 일부로서 군 감독을 수행

■ 의회 옴부즈만, 인권 옴부즈만 등이 업무의 일부로 국방 감독 업무를 수행

재직자	민간 옴부즈만
장점	군인의 권리가 시민의 권리와 부당하게 차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비용 절감
단점	국방부문에 대한 전문성 결여, 광범위한 직무로 인한 국방 문제 집중 실패 우려
특징	국방 관련 담당 직원 수가 적음, 다루는 사건 수가 많지 않음
채택국가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군내 지휘계통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군사 감독기구

■ 국방 문제를 전담하는 옴부즈만을 군내 지휘계통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

재직자	민간 옴부즈만
장점	관심을 군사문제에 집중, 감독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단점	상대적 고비용
특징	부대 감찰권, 독립적 조사권, 연례보고서 작성·제출, 조사결과 공표 제도 마련 등
채택국가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군사행정 분야에서 **법률에 의한 행정처리 부재**
과도한 조직 경직성으로 상하 간 의사소통 미비
사회 변화를 외면한 군의 특수성 강조
사법권과 군 지휘권이 연계되는 구습의 지속

▶

군 계통으로부터 단절된
옴부즈만이 필요한 현황에
맞지 않는 형태

군의 강한 폐쇄성

군사문화의 영향이 강한 사회 특성

▶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슨한 옴부즈만
실효성 있는 활동 어려움

대한민국의 군사행정 특징, 군인 인권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적의 방안

사례연구:

독일의 국방 옴부즈만 운영

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가?

독일군은 4년 전까지 징병제를 시행하였고, 비교적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는 등 대한민국 국군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독일의 군인 법제는 군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한 판례가 다량 축적되어있다는 점에서 본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군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법의 지배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선진적인 국방 옴부즈만 제도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

독일군 병사의 기본권 보호
(병사가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고 직접 국방 옴부즈만에게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지위

임기 | 5년, 연임 가능
자격 | 만 35세에 이른 연방하원 선거권자
성격 | 연방 하원의회의 보조기관
- 연방하원이 선출, 해임, 활동 지침을 제정
- 옴부즈만은 연방하원에 연례활동보고를 해야 함

권한

- 국방장관 및 하위기관, 직원에 대한 **정보요구권 · 문서열람요구권**
  (불가피한 비밀유지사유 존재 시에만 국방장관이 거부 가능)
- 군부대, 참모부, 각종 관청 및 시설에 대한 **불시 방문권**
- 군 징계권 행사, 형사 처벌에 대한 **종합 보고서 · 통계자료 요구권**
- 공개거부 재판, 징계 절차 등에 대한 **참석권**
- 자유로운 활동 및 국방장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성과

- 연 평균 **5,000 여건의 진정** 건수 (1959~2015)
- 군인 인권 보호 기구로서의 **국민적 신뢰**

관련 주요 법조문

- 옴부즈만에게 진정했다는 이유로 직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 (군 형법 제7조)
- 진정을 방해하는 상관은 군 형법상 소원방해죄로 처벌 (군 형법 제35조)
- 법원과 행정관청은 국방 옴부즈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함 (옴부즈만법 제4조)

한국형 국방 옴부즈만 '군인권보호관'은 왜 필요할까요?

설문조사 자료 정보

이하에 사용된 설문조사 자료는 군 내 인권침해 구제제도와 국방 옴부즈만에 대한 장병의 인식 지형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4년 하반기, 19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은 군인권센터에 의해 약 2개월 간 현역장병 12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군 인원 비례를 고려하여 육(61%), 해(18%), 공(21%)군을 나누어 진행하였고, 장교(9%), 부사관(17%), 병사(74%)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해병대는 부대 비협조로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군내 인권 침해 문제의 현주소

계속해서 늘어나는 군내 인권 침해 사건 접수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 확인된 군내 인권 침해 문제는 대개 구타, 가혹행위, 폭언, 성범죄 등 권력 관계를 이용한 개인 간의 사건·사고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2015년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연간 주요 피해유형별 통계자료에 의하면 구타·가혹행위(26%), 폭언(10%), 성범죄(4%)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군 조직 상의 근본적 문제 수면 위로

그러나 2016년 현재까지 군인권센터에서 집계한 연간 주요 피해유형별 통계자료는 병영부조리(34%), 의료사고(15%) 등 군 내 시스템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피해사례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군인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새롭게 사건·사고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군인의 인권의식 확산에 따라 기존에 말 하지 못했던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군 시스템의 부조리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군내 인권 침해 문제가 단순히 잘못된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지나친 경직성, 폐쇄성, 법보다 명령이 앞서는 조직문화의 특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군내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군 조직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행 군내 인권 침해 구제 제도 평가

① 구제 제도 마련 정도에 대한 평가

간부의 경우 군 내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

② 구제 제도의 활용성 평가

인권 침해 구제제도의 활용성에 대해
병사는 부정적, 간부는 긍정적으로 인식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①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병사의 필요성 절감이 큼

② 옴부즈만 제도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

국방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병사의 기대가 높음을 확인

‘군인권보호관’ 은 군내 인권 취약지대의 희망입니다.

구제 제도의 효능감에 따른 옴부즈만 설치 필요성 인식

범주	상관계수
인권침해 구제 제도의 마련 정도	– 0.183
인권침해 구제 제도의 활용 정도	– 0.183
국방 옴부즈만 제도의 기대 효과	0.705

[표. 구제제도에 대한 인식과 국방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간 상관계수]

- **군 내 인권 침해 구제 제도가 모자라다고 생각할수록 옴부즈만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 **군 내 인권 침해 구제제도의 활용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옴부즈만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국방 옴부즈만은 주로 병사, 구제제도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자 등 군내 인권 취약 계층에서 그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군내에서 제대로 된 인권 침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군 시스템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형 국방 옴부즈만인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군인권 보호관 논의 연혁

2014. 12. 1

군인권공동행동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이 절박하다는 인식 하에 군인권센터 등 12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2014년 9월 24일 결성한 단체로 '군인복무기본법'의 모태가 된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안)' ,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2014. 12. 18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군내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해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민·관·군을 아울러 2014년 8월 6일 발족시킨 조직으로 12월 18일에 권고안 발표로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2015. 7. 30

군인권개선특위

윤 일병 사망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19대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야 공동으로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 31일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군인권개선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7월 24일 활동을 마무리하며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사법원 폐지 등 정책개선과제를 채택하였습니다.

2016. 6. 30

군인권공동행동 '군인인권보호관법' 입법 청원

소속 | 국회 국회의장
임기 | 3년, 1회 연임 가능
선출 | 국회 군인인권보호관 후보추천위 추천, 국회 국방위 3분의 2의 찬성, 본회의 승인
권한 | 불시방문조사권, 직권조사권, 진술요구권, 출석요구권, 긴급구제조치 권고권, 수사의뢰권, 감정의뢰권, 자료제출요구권, 정보공개요구권 등
업무 | 군인권 보고서 작성 및 국방위 보고, 법령 · 제도 개선권고, 조정, 징계권고
특징 | 제3자 진정 가능, 보호관 업무 방해 시 형사처벌 조항 존재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권고안 中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 언급 (**국무총리 직속** 차관급 기구 설치)

▼

국방부 반응

'장병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검토'
'옴부즈만의 독립성 보장, 조사권, 부대방문권(사전통보) 등 활동 여건 보장대책 강구'

- 국방부 등 국가기구의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긍정적 의사 타진의 성과**
- **행정부 소속 감시기구**가 동일한 소속인 **군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한계**

군인권개선특위 정책개선과제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에 따라 발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군인권공동행동의 법안과 일치하나, **소속기관을 국회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2015년 7월 30일에 발의되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국회 운영위에 계류하던 중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률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군인복무기본법' 제42조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어디에 설치되어야 할까요?

희망 소속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군인권보호관이 어디에 소속되느냐는 국방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권한 및 독립성과 직결되는 지점으로 제도 설치의 최대 쟁점입니다.

① 국방옴부즈만 희망 소속 기관에 관한 설문조사

병사의 경우 국가인권위 산하,
간부의 경우 국방부 산하를 선호함

② 구제제도의 효능감 인식에 따른 희망 소속기관에 대한 차이

구제제도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경우 국방부 산하,
낮은 경우 국가인권위 산하가 높은 순위

군인권보호관은

올바른 행정 감시를 위하여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에 소속된
권익위, 고충처리위, 국방부 산하 등은
효용이 낮습니다

▶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해답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유엔 파리원칙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 3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국가기구입니다.

19대 국회 당시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사법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2015.7.24, 재석의원 222명 중 216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으로 통과)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던 '군인권보호관' 제도. 국민의 열망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독 립 성 보장방안

군인권보호관 설치로 인해 추가되는 국가인권위 위원을 기존 19대 국회 법안에서는 국회 추천 1인, 대통령 추천 1인으로 규정하였으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추천 2인'으로 변경한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제복 입은 시민’을 위하여

20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합시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마땅한 가치이자 권리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군인 역시 다른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격의 주체이고, 민주 사회의 주역으로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군대 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건들은 군 당국의 미흡하고 수동적인 대응 방식과 제도적 미비, 그리고 비민주적인 군 사법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악순환의 굴레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군 내 인권침해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사회 개혁과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는 스스로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구성원들의 인간적 권리를 묵살하고 침해해왔으며,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따라서 군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민통제가 절실합니다.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해법이 될 것입니다.

군과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철책 울타리 안에서 특수성의 이름 아래 인권의 사각지대로 자리해온 군대를 국민의 통제 하에 제자리로 돌려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존중받는 사람들, '제복 입은 시민'이 모인 군대가 국민을 존중하는 바른 마음으로 국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군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과, 지금도 어딘가에서 인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을 군인들을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을 반드시 설치합시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김광수, 「영국의 인권법과 인권기관」, 유럽헌법연구 제9호, 2011.

김종서, 「군사옴부즈만제도 연구」, 한국공법학회, 200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세계각국의 옴부즈만제도』, 1995.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요청자료, 200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선진 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 2003.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발표 보도자료 (14.12.18)

군인권센터,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국방 옴부즈만법 연구』, 2014.

법률신문, 2014.12.01.

심재승, 「스웨덴 의회옴부즈만과 행정감시의 관계」, 한국행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2013.

열린우리당 병영문화개선위원회, [병영문화개선대책 대토론회 자료집], 2005.

오준근, 「국민의 권리구제 효율화를 위한 옴부즈만 관련 법제정비방안」,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 2005.

이계수,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제27호, 2005.

이재승, 「독일의 군인법제」, 일감법학 제16호, 2009.

임태훈,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하동원, 『한국형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한국행정학회, 『정부조직의 재설계방향』, 2005

국외자료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pened for signature 16 December 1966.

독일 연방하원 국방옴부즈만 2014년 연례보고서

(Deutscher Bundestag Unterrichtung durch den Wehrbeayftragten Jahresbericht 2014 (56. Bericht)), 2015.

존중받는 군인, 튼튼한 국방!

군인권보호관 제도 길라잡이

2016. 9. 26

국회의원 우 상 호

Homepage : www.woosangho.net | E-mail : wsh2016v@gmail.com
[국회의원사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05 2층 201호 | Tel: 02)364-0386 | Fax : 02)364-7658
[국회의원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442호 | Tel: 02)784-3071 | Fax : 02)788-0261